

직장예비군연대규정

제정	1998. 7.
개정	2004. 1.
개정	2007. 9.
개정	2009. 4.
개정	2013. 4.

제 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예비군 연대를 관리 및 운영하는데 있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(2011.9.15. 법률 제 11042호)관련근거에 의거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와 교육훈련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데 있다.[개정 2013. 4. 1.]

제2조 (명칭)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예비군연대는 우송정보대학과 통합하여 우송대학교 직장예비군연대(이하 “예비군연대”라 한다) 라 한다. [개정2007. 3. 1.] [개정2009. 4. 1.]

제3조 (직제) 예비군연대는 총장직속기구로 편성하여 운용한다. [개정2009. 4. 1.]

제 2장 조직편성 및 자원관리

제4조(편성 및 임용) 본 대학 및 우송정보대학에 재학중인 학생, 우송공업대학 학적을 가진 학생, 교직원(사무원포함), 고용원 중 예비군을 대상으로 편성한다. [개정2007. 3. 1.] [개정2009. 4. 1.] [개정 2013. 4. 1.]

제5조 (대원편입) ① 대학에 편·입·복학 등 등록시에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예비군연대에 예비군전입신고를 실시하여야 한다.[개정2013. 4. 1.]

②교직원(사무원 포함) 및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는 예비군연대에 예비군전입신고를 실시하여야 한다.[개정2013. 4. 1.]

제6조 (신상이동 통보) 예비군 대원은 주소, 신상변동 및 병적사항 변동시 그 변동사항을 예비군연대본부에 통보해야 한다. [개정2009. 4. 1.]

제7조 (자격상실) 예비군연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휴직, 면직, 휴학, 자퇴, 제적, 졸업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때에는 대학예비군대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다른 직장 및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된다. [개정2009. 4. 1.]

제8조 (자원관리) 예비군자원관리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관리한다. [개정2009. 4. 1.]

제 3장 교육훈련

제9조 (교육훈련적용) ①학생예비군 및 교직원 방침일부 보류자는 향방기본훈련 8시간을 향토사단 대학 직장예비군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실시한다.

②교직원 보류대상자를 제외한 일반예비군은 년차별 교육시간을 적용한다.

제10조 (훈련보류 및 연기) ①교육훈련을 보류(연기)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보류(연기)원서 1부를 작성, 예비군연대본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FAX를 이용하여 제출 한다. [개정2009. 4. 1.] [개정2013. 4. 1.]

②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를 받은 자로서 훈련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원서를 작성,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예비군연대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.[신설2013. 4. 1.]

제11조 (훈련통지) 교육훈련 대상자에게는 훈련통지서를 학부 및 학과에 의뢰하여 교부하되 홍보수단(안내문 공고, 이메일, 문자 등)을 최대한 활용하여 훈련참여율을 향상시킨다.

제12조 (불참자 처리) 교육훈련 불참자는 향토사단의 교육훈련계획에 의거 별도의 보충교육을 실시한다.

제13조 (해외출국자 관리) ①해외출국자는 지방병무청에서 통보되는 출국자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180일 이상 체류 시 보류조치하며 일시 귀국 후 14일 이내 재출국한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 처리한다. 단, 출국일과 귀국다일을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한다.[개정2013. 4. 1.]

②법규보류자는 국방동원정보체계를 법규보류자 명부를 변동사항 발생시 출력하여 관리/유지한다.[개정 2013. 4. 1.]

제 4장 동원지정자원관리

제14조(동원지정자원관리) ①예비군동원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동원하며, 신속한 동원에 대비 국방동원정보체계상에서 동원지정 된 학생예비군 동원자원을 관리한다.

②예비군연대는 병무청으로부터 접수한 학생예비군에 대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대상자에게 통지하고, 이를 통지받은 본인은 예비군연대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한다.[개정2013. 4. 1.]

제15조(직장방호) 예비군연대는 전·평시 적의 침투·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비하여 가용자원(동원미지정자원, 민방위대원 등)을 활용, 직장방호계획을 수립한다.[신설2013. 4. 1.]

제16조(통합방위협의회/통합방위지원본부) 예비군연대는 직장방호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.[신설2013. 4. 1.]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